

원자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및 제출

협회는 원자력법시행규칙과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부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 받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사의 분야별 관계자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9개의 회원사로부터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5.11(금)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금번에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일부의 회원사 관계자만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차후에는 협회 홈페이지등을 통해 회원여러분 모두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문의 : 기획관리팀 (박태진 :3411-6494)

RI 이용에 따른 건의서 제출

- RI 판매업체의 판매취급 개선방향 -

현재 RI판매업체는 사용자(구매자)의 인허가 여부를 파악하여 허가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RI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5. 18(금) 과학기술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관리규정 작성(안)」에 의하면 판매업체별로 작성하는 안전관리규정은 “구매자의 허가내용 범위 내 판매”를 명시토록 하고 있어, 판매업체로 하여금 구매자의 사용실적관리의 의무까지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령 제17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RI 판매시 안전관리 측면에서 구매자의 인허가 여부를 파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RI의 무단 공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나 사용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의무라 할수 있는 인허가량 초과 여부까지 판매업체가 확인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판매업체는 “구매자의 RI사용에 관한 인허가여부”만을 확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의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완화를 요청하였고 RI의 유통단계별로 판매업체 및 사용자가 RI 안전관리 책무를 분담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에 상승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다.